



경조비지급규정

제정일	2016. 3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 교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경조비 지급 구분) 경조비 지급은 경사 및 조사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경사 : 본인의 결혼, 자녀의 결혼
2. 조사 : 본인의 사망, 배우자의 사망, 부모의 사망, 배우자 부모의 사망, 자녀의 사망

제 3조 (지급액)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경조금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조 (경조비 지급 절차) 경조비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경조비를 신청한다.

제 5조 (경조비 지급) 주관부서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즉시 총장의 결재를 받아 경조비를 지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